

판교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관리규정

제1장 이용자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판교노인주간보호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서비스 대상)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(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이용절차)의 각항과 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(정의)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,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.
- ② 치매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 중 주·야간보호가 필요한 자
- ③ 기타 센터의 장이 주·야간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④ 등급외자는 정원의 20%이내 이용가능

제3조(이용 정원) 본 시설의 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신고증에 의한 입소정원을 이용정원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주·야간보호의 입소 정원은 남녀 구별 없이 일일 이용정원 21명 이내로 한다.
- ② 입소 정원 증원신고 시, 해당 인원으로 규정한다.

제4조(서비스 대상 제외자) 제2조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①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(법정전염병 등)
- ②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(통제 불능, 사고위험성 높음 등)
- ③ 말기암 환자 및 중증의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자
- ④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 내내 전문적인 1:1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
- ⑤ 기타 시설장이 서비스 대상 제외자로 판단한 자

제2장 입소

제5조(운영시간) 주야간보호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이며,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표준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. 본 센터에서는 이용자와의 협의 하에 다음 각 항과 같이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.

- ① 주·야간보호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주 5일이며, 1일 서비스시간은 운영시간을 포함하며, 주중 09:00-18:00까지 이용할 수 있다.(단, 법정공휴일, 임시휴일은 운영하지 아니한다.)
- ②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기 및 연장운영이 가능하다.
- ③ 휴관은 법정 공휴일을 준용하되, 시설운영을 위한 임시휴관은 시설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모집방법) ① 이용(입소)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또는 내방, 방문 등을 통한 모집

② 지역 내 타 유관기관(주민센터, 보건소, 치매센터, 노인복지기관 등)과의 연계를 통한 모집

③ 기타 본 시설의 이용(입소)자 모집 홍보물, 소식지, 현수막,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한 모집

④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(장기요양홈페이지, 기관 홈페이지 등) 등을 통한 모집

제7조(이용절차에 관한 사항) ① 이용(입소)자 본인 또는 가족이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후 상담을 통해 이용(입소)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이용(입소)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(입소)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.

④ 정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순서대로 이용(입소)의 기회를 준다.

⑤ 이용(입소)이 결정되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용을 확정한다.

제8조(이용계약의 목적 및 필요서류) ① 계약목적은 이용(입소)자와 시설 간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, 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② 이용계약은 이용(입소)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용(입소)자 본인이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하여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③ 이용(입소)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.
- 2)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.
- 3) 주민등록등본 1부.
- 4)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 1부.
- 5) 장기요양기관 입소·이용의뢰서(해당자) 1부.
- 6) 처방전 및 치매진단서(해당자) 1부.
- 7)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(해당자) 1부.
- 8)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.

제9조(준비물) 이용자의 입소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통사항: 실내화, 의류(상하 속옷 1벌, 하의 1벌)

② 개인사항: 복용약품, 위생용품(기저귀, 일자기저귀, 요실금용품, 물티슈) 등

제10조 (이용계약) ① 계약목적은 센터 이용자는 이용절차, 이용수칙, 사고대비,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.

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'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'(이하 "계약"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
- 1) 계약 당사자
- 2) 계약기간
- 3)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- 4)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
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정여부 등을 확인 한다.

제11조(계약기간) ①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며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

② 제 ①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④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

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⑥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)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: 신원인수는 신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,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진 서류를 확인하고,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,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제12조(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)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.

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
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.

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⑤ 비급여 항목 및 비용

1) 식비: 회당 4,500원

2) 간식비: 1일당 (2회제공) 2,000원

⑥ 센터 이용횟수, 이용시간, 이용료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(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기준을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시)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사전 고지 후 동의서를 받는다.

제13조(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.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

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

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

제14조(이용료 미납) 이용료 미납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.

①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용료(본인일부부담금, 비급여항목)가 미납되어 센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는 납부일 1개월 전에 지불할 것을 독촉하고 문서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.

②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인, 가족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해 가기 위해 재가서비스 제공, 타 시설, 입원 등 수속을 협조해 주며 조정해 주도록 노력한다.

③ 이용자가 이용료의 누적체납, 연락두절 등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신원인수인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이행하고 입소자의 거취를 책임져야 한다.

제15조(이용료 납부원칙)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

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6조(권리와 의무)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

1) 이용(입소)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
(단, 병원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
2) 이용(입소)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기관의 방침에 따라 응급처치 후 처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림)

3)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4) 월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

② 이용(입소)자 권리 및 의무

1)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권리

2)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, 선택할 권리

3)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

4)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

5) 면회, 외출의 권리

6) 노인인권을 보호받을 권리

7) 월 이용료 납부 의무

8)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
9)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10)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③ 보호자(신원인수인)의 의무와 권리

1) 이용(입소)자의 상태 및 신변에 대해 알 권리

2) 고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

3) 월 이용료 납부 의무

4) 이용(입소)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
5) 보호자 인적사항 등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6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
7)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
8)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제17조(계약의 해지) 센터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(입소)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.

- 1)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
 - 2)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.
 - 3) 이용(입소)자가 사망한 때
 - 4) 이용(입소)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3주 이상 장기 결석하는 경우
 - 5) 이용(입소)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
 - 6) 이용(입소)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
 - 7) 이용(입소)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
 - 8) 폭력성 등 중증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(입소)자 및 공동생활에 막대한 지장 및 위험을 초래한 때
 - 9) 이용(입소)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- 10) 장기요양급여 비용 연체가 제 7조 해당하였을 때
 - 11)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협조가 되지 않을 때
- ② 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(입소)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이용료 및 비용 변경절차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.

- 1)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- 2)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정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- 3) 이용자의 건강상태,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
- 4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- 5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